

『전통시장 활성화』 결연

서대문카포스협동조합 ↔ 서대문구 ↔ 영천시장상인회 Market and Carpos 시범사업 업무협약서

서대문구와 카포스협동조합, 영천시장 상인회는 지역경제 발전과 동반성장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조한다.

제1조(목적) “서대문구”와 “서대문카포스협동조합, 영천시장 상인회” (이하 “양 기관”)는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봉사 등 사회참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지역경제 살리기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 및 지원
2.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협력
3.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방안 강구
4. 홍보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5. 기부, 봉사, 참여 등 성숙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내용은 양 기관 간 상호 합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016. 1. 31.까지 한다. 단, 만 기일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 및 연장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그 효력은 상실된다.

제5조(신의성실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존중하고, 관련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0월 일

영천시장 상인회
회장 조영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청장 문석진

서대문카포스 협동조합
조합장 전라문